(사)대한볼링협회

각종 위원회 규정

목 차

1. 상임이사회 규정 ····· 1
2. 인사위원회 규정 ····· 2
3.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 4
4.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6
5. 기술·경기용품 공인 및 공인검정 위원회 규정 ····· 29
6. 홍보위원회 규정 ····· 31
7. 교육위원회 규정 ····· 33
8.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 35
9. 여성위원회 규정 ····· 37
10. 국제위원회 규정 ····· 39
11. 선수위원회 규정 ····· 41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상임이사회 운영규정

1997. 2. 1.제정
2014. 5.15.개정

제1조(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이하 “본 회”라 한다)정관 제38조 1항에 의하여 제정하며 상임이사회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집행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기 능) 본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의 위임 사업 추진
2. 중요대회 관련 경기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설정
3.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조 직) 본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약간 명, 전무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5조 (운 영)

1.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를 총괄하며 회장 유교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회의는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5. 간사는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사무처리) 본 상임이사회의 사무처리는 본 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7조 (시 행)

1. 본 규정 제정으로 상임집행위원회 규정(1996.3.12제정)은 폐지한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199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5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1997. 9. 3.제정
2013. 2. 7.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 협회 처무규정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위원회는 본 협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행정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협회 처무규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직원에 적용된다.

제4조 (조 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지명한다.

제5조 (기 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채용·해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5. 인사행정 수립에 관한 사항
6.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
7. 기타 인사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운 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의결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진술권부여) 본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항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 (심　의) ① 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결의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인사사항은 이사회의 재심에 부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199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1993. 3. 4.제정
1993. 7.19.개정
1996. 3.12.개정
1997. 2. 1.개정
2013. 2. 7.개정
2014. 5.15.개정

제1조 (명 칭) 본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써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선수·지도자의 양성, 경기기술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상비군선수, 청소년대표선수, 청소년대표상비군선수의 합리적인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기 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국가대표선수 및 청소년대표선수 선발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망 신인선수 발굴 육성
3. 종합적인 경기력향상계획 수립
4. 국제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 계획 수립
5. 볼링코치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6. 강화훈련실시·지도·감독·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7. 국가대표선수단·청소년대표선수단 감독·코치·추천
8. 기타 선수육성·선발·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 (구 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10인 이내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다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국가대표선수 출신, 지도자대표, 팀 관계자대표, 시도대표자, 비경기인대표, 여성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5.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1.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및 소집)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199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1993년 7월 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1996년 3월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1997년 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3년 2월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6.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5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2016.12.14.제정
2017. 7.28.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대한볼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협회, 시·도 볼링협회와 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7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협회, 시·도 볼링협회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26조 및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도 볼링협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 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대한체육회 표창, 협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협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협회 정기표창에는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이 있다.

③ 협회 표창은 매년 대의원 총회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 연1회
2. 공로패 및 감사패

④ 임시표창은 전문체육,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공헌한 사람, 협회 또는 시·도 볼링협회 임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볼링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4.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자

⑤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절차) ① 자체표창은 협회가 지정한 시·도 볼링협회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협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스포츠인권센터

제17조(스포츠인권센터 설치) ① 협회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홈페이지 등에 인권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선수권익침해 사안(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 포함)에 대해 신고 접수, 조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8조(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협회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풀은 선수 및 지도자 출신자,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예방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시·도교육청 등)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에서 위촉한다.

④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해당 단체에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경우 심의하여 규정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사업 및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 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 TF팀 구성, 실태조사 등)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제19조(위원회의 설치의무) 협회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증거우선의 원칙) 제19조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 (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제22조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2조(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하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협회 및 시·도 볼링협회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정관 제35조제4항에 따라 협회 임・직원 및 시・도볼링협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협회 및 시·도 볼링협회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 또는 해당 시·도 볼링협회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및 시·도 볼링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대한체육회는 협회가 결정한 징계사항과 시·도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시·도 볼링협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제24조(징계종류) ①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②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③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④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 각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임원은 징계만료시까지 선수, 지도자,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5조(징계요구) ① 협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2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시·도 볼링협회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시·도 볼링협회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2조제1항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9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시·도 볼링협회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2조제2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협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협회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대한체육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한체육회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협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의 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제22조제2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대한체육회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신청은 대한체육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대한체육회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대한체육회 위원회가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⑨ 대한체육회 위원회는 협회 위원회, 시·도 볼링협회에 설치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시・도종목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32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31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31조제3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또는 재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31조제2항 또는 제32조제6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2조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및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징계혐의자가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대한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4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는 제30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협회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의 보고) 제19조에 따른 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대한체육회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협회 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한체육회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협회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협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시·도위원회는 해당 대한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대한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협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대한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37조(행정처리) 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0조(규정 제·개정) ① 협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협회 규정에 우선하며, 협회가 규정을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대한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2017. 7. 2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대한볼링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대한볼링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직원	·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1)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운동부2)	·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선수 지도자	·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 ·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 지도자 심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28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4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원본)					
1)성 명	(한자)			2)소 속	
3)본 적					
4)주 소				5)주민등록번호	
6)직위 및 직급		7)근무 기간		8)수공 기간	
9)추천 훈열		10)추천 서열		11)사정 훈격	
주 요 경 력 (학력과 경력)					
12)년월일	13) 이 력			14)년월일	15)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년월일	17) 내 용			18)년월일	19) 내 용
조 사 자					
20)소속					
21)직급				22)직책	
23)성명					
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뒷면)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포 상 대 장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table>
<tr><td rowspan="2">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td><td>① 소 속</td><td>② 직 위 (급)</td><td>③ 성 명</td></tr>
<tr><td></td><td></td><td></td></tr>
<tr><td>④ 의 결 주 문</td><td colspan="3"></td></tr>
<tr><td>⑤ 이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년 월 일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td></tr>
</table>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기술, 경기용품 공인 및 공인검정위원회 규정

2012.10.11 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볼링협회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기술, 경기용품 공인 및 공인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 협회가 주최·주관·공인 또는 승인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시설용구포함) 및 용구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하고 모든 선수가 규격품을 사용토록 하여 공정을 기하고 각종 정보·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을 통해 기술적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시설·기구의 관리운영 및 공인에 관한 사항
2. 각종대회 시설점검 및 레인정비 관리 감독
3. 공인 및 검정방법의 제도화
4. 경기용품의 공인에 관한 사항
5. 각종 수익사업의 개발 및 계획 수립
6. 국외 기술정보·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7. 선진훈련 기술개발 및 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8. 국제·국내대회의 레인패턴 및 레인정비에 관한 사항
9. 국제적 볼링기술 교류에 관한 사항
10. 기술운영요원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볼링의 기술적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인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볼링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부 임기와 같이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볼링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홍보위원회 규정

2011. 1.27.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이하 “본협회”라 한다) 정관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 협회와 국내외 볼링 발전을 위하여 공보, 미디어, 볼링의 역사,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 등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조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본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볼링 홍보와 관련된 사항.
4.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2인.
3. 위원 1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1년 1월 27일 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교육위원회 규정

2017. 1.25.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볼링협회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 협회의 감독·코치양성 및 연수교육 등 경기력향상을 위한 교육관련 사항을 검토·심의·집행하고 볼링 지도자 양성에 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볼링 감독·코치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2. 1급, 2급 볼링코치 양성 교육
3. 볼링교재 발행에 관한 사항
4. 코치양성 교육을 위한 교재 발행
5. 볼링경기 향상에 관한 제반 교육
6. 기타 볼링코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인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볼링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2017. 1.25.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볼링협회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볼링을 국민체육으로 육성, 보급과 볼링의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볼링 생활체육의 기본방침 수립
2. 생활체육 볼링의 진흥방법 연구
3. 직장 및 클럽 볼링의 지도육성과 행사에 관한 사항
4.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볼링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체육 볼링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인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볼링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여성위원회 규정

2012. 8. 8.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볼링협회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여성볼링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볼링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여성볼링행사에 관한 사항
3. 여성볼링발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볼링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인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볼링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부 임기와 같이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국제위원회 규정

2012. 2. 2.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볼링협회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국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국제볼링 외교활동에 대한 장·단기 대책 수립과 국제 회의 참가 및 국제대회의 국내유치 등 볼링 스포츠외교 전반에 걸친 정책을 검토하여 한국볼링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볼링 국제 교류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함으로써 한국볼링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대한볼링협회의 자문에 응한다.

① 볼링 외교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② 국제대회, 국제회의 등의 대책수립, 국내유치 관련 제반사항

③ 국제 볼링계에 대한 홍보 및 외교활동 전개

제4조(조직)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① 제6조 1항에 의거 선임되는 위원장

② 대한볼링협회장이 임명하는 인사

③ 간사는 대한볼링협회 사무처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인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볼링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부 임기와 같이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볼링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선수위원회 규정

2014. 5.15.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및 본 협회 정관 제 3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협회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② 본 협회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2.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침해(선수 폭력·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관한 사항
4. 선수등록 업무 및 규정 심의
5.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10인 이내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법률, 인권분야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

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스포츠人권익센터 설치) ① 본 협회는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人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본 협회는 본 협회 홈페이지 등에 권익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다.

제15조(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본 협회에서 위촉하며, 행정지원 직원 이외에는 선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역할은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선수인권과 관련한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 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 TF팀 구성, 실태조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대상) ①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본 협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스포츠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 침해(선수폭력・성폭력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 17조(조사 및 구제절차) ①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본 협회는 1차 조사 및 처리기관이며 대한체육회는 2차 처리기관이다.

② 대한체육회에 신고 접수(또는 진정)된 선수 권익침해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 기관인 본 협회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한체육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④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본 협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본 협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2. 본 협회는 본 협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3. 본 협회와 시・도체육회간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소관기관을 결정한다.

⑤ 대한체육회에 직접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당 협회에 이

송할 경우 대한체육회는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6개월 미안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2.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영구제명
3. 성폭력범죄 행위 외 성 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4. 제1호와 제3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 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벌 하며,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 한다.
5. 징계일 현재 선수, 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수, 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 부터 발생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대한체육회와 징계대상자 소속 시도체육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한 단체의 소관 위원회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청구) ① 제18조 제4항의 본 협회의 1차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직접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의 재심기간 중에도 본 협회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조사 및 직접 소환 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차 재심결과를 당해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징계대상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단체장, 소속 시・도지부 및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청구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0조(사후관리 및 행정처리) ① 본 협회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대한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스포츠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피해자 및 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4년 5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